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』의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』에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학교 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식을

폐기하지 않고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

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탄소중립의 가치를 반영한

급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.

- 이에 서울시교육청, 교육지원청, 학교가
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기부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
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

-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
안 제1조와 제2조에는
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,
안 제3조에는 교육감, 교육지원청 교육장,
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했고,
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과
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.
안 제8조에는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해
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
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행정처분 면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
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